#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점검회의 모두발언

2024. 10. 8.[화] 10:00~11:00

(마포 프론트원 5층 컨퍼런스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권 협회 등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이 국회 논의를 거쳐 금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17일)을 앞두고 새로운 채무자 보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해 온 상황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의의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와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출범(2002년) 및 법원 개인회생제도 도입(2004년), 채권추심법 제정(2009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금융회사 자체적인 채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정되었으며, 오는 10월17일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직접 협의하여 채무문제를 해결하고
- ②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를 완화하며,
- ③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 ④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채권자의 회수가치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Ⅲ.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첫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인채무자보호법」집행점검반(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을 신설·운영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법통과 이후

지난 몇 달 동안에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QA집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법시행 이후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금융현장에서의 실제 법집행 상황을 밀착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액채무(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이 도입되었으며, 이와 같은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연체가 발생한 초기에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조기에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회수가치가 증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을 비롯하여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예 : 웹, 앱, 배너 등을 통한 일반국민 대상 채무조정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안내 강화

#### Ⅳ. 맺음말씀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만건) : ('22년) 13.8 → ('23년) 18.5 → ('24.6월) 9.6 법원 회생·파산 신청(만건) : ('22년) 13.1 → ('23년) 16.2 → ('24.6월) 8.6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기관은 장기연체자와 다중채무자와 같이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公-社) 채무조정 체계**가 금융 현장에서 내실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 금융위원회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